

○産業課長 李茂雄

(김용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)

答 辯 書

○質疑議員 김용주 의원

○答辯公務員 산업과장 이무웅

○題 目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

○質疑要旨

1.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장소, 대상자 선정방법 및 운영방법, 지금까지의 실적

□ 答 辯 內 容

- 먼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실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
현재 우리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생산한 농민이 직접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방법과 산지 수집상에게 발매기로 팔아 넘겨주는 포전 매매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이에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체제로 생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농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간이선별작업, 임시저장, 세척 등으로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지금까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'94년부터 '98년까지 총 27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“농어촌발전계획”에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년도별 간이집하장 설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'94년 5개소 (다사 2, 하빈 2, 유가 1)
 - '95년 4개소 (다사 2, 하빈 2)
 - '96년 6개소 (다사 2, 하빈 4)
 - '97년 6개소 (장소미정)
 - '98년 6개소 (장소미정)

- 사업대상지역 및 선정방법,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'94년 12월 농림수산부에서 “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” 책자가 배부되어 각 읍면·농촌지도소·농협 관계자등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한 관계책자(4권)도 당일 배부하였으며, 농림수산분야의 모든 사업은 본책자 「농림수산업통합실시요령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사업대상자는 단위농협(영농회, 작목반), 영농법인등 생산자 기초조직을 대상으로 선정하며, 생산자의 공동출하비율이 50%이상인 조직과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.
- 또한 선정절차는 사업대상자(농협, 영농회, 작목반, 영농법인)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협군지부에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장은 사업대상 및 입지선정 기준을 토대로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.
- '94~'96까지는 금년 8월 16일 수정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심의 확정하였고 '97~'98사업은 아직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, 집하장의 운영 및 사후관리는 사업대상자가 하고 군수 및 농협군지부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 감독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.

○建設課長 將根壽

(제갈 재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)

소하천 점 · 사용현황

건설과장 장근수

읍 · 면별	건 수	면 적	부 과 금 액	비 고
계	654	㎡ 265,169	천원 14,566	
화 원 읍	204	76,784	4,385	
가 창 면	65	29,040	2,325	
다 사 면	26	9,590	722	
하 빈 면	—	—	—	
옥 포 면	26	11,871	3,348	
논 공 면	55	68,129	372	
현 풍 면	52	7,861	2,521	
유 가 면	207	59,486	825	
구 지 면	19	2,408	67	

※ 한해로 인하여 일부지역 부과금액 감액